

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5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체육시설 사용시 대관 및 운영체제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제명을 “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”로 변경
-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용어 정비(안 제3조)
 - 단체입장의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30인 이상으로 명시
 - 군인의 범위를 의무경찰을 포함함으로써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
- 체육시설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(안 제8조)
 - 시설관리상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보수 등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
 -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
- 사용료 납부일을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로 하여 사용료 납부방법을 현실화 함(안 제10조)
-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대관신청 정립(안 제13조)
 - 주최·주관 ⇒ 구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로 한정

3. 참고사항

- 「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」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”를 “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박정희체육관 및 시민운동장”을 “박정희체육관, 시민운동장, 보조경기장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전람”을 “전람, 광고게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경기장”을 “체육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또는 그 구성원”을 “구성원 30인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 중 “하사군인”을 “하사”로 하며, “전투경찰”을 “전투경찰, 의무경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 중 “각급 학교”를 “교육청 및 각급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, 공연, 전시 등 행사

제8조제2호 중 “시설관리상”을 “시설관리상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보수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

제10조제3항 중 “종료와 동시”를 “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주최·주관”을 “예산을 지원하여 주최·주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<u>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</u> 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“체육시설”이라 함은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치 운영하는 <u>박정희체육관 및 시민운동장</u>을 말하며, “부대시설”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. 2. “시설의 사용”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(텔레비전포함), 공연, <u>전람</u>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. 3.“전용사용자”라 함은 <u>경기장</u>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, “전용료”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 4. ~ 6. (생략) 7. “단체입장”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. 8. ~ 9. (생략) 10. “군인”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<u>하사군인</u>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<u>전투경찰</u>을 포함한다. 11. ~ 12. (생략) 제5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①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1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.	<u>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</u> 제3조(정의) ----- ----- 1. ----- ----- <u>박정희체육관, 시민운동장, 보조경기장 등</u>----- ----- 2. ----- ----- -----<u>전람, 광고게시</u>----- ----- 3. -----<u>체육시설</u>----- ----- ----- 4. ~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 <u>구성원 30인 이상</u>----- ----- 8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----- <u>하사</u>----- ---<u>전투경찰, 의무경찰</u>----- 11. ~ 12. (현행과 같음) 제5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① ----- ----- -----	• 제명 뛰어 쓰기 • 조례의 용어 정비 • 단체입장 구성원의 구체적인 인원명시 • 사용료감면 대상 확대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1. ~ 2. (생략) 3. <u>각급 학교</u>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4. (생략) 5. <u>문화예술행사</u> : 공연법령에 의한 공연행사 제8조(사용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1. (생략) 2. <u>시설관리상</u>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. (생략) 〈신설〉 4. 기타 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(사용료종류 및 납부방법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료는 시설사용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제13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생략) ② 다만, 구미시가 주최·주관하는 각종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한다.	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교육청 및 각급학교</u>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체육활동 이외의 문화, 공연, 전시 등 행사</u> 제8조(사용제한)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시설관리상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보수 등</u>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제10조(사용료종류 및 납부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<u>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</u>----- ----- 제13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<u>예산을 지원하여 주최·주관</u>----- -----	• 체육시설 사용 제한 : 유지보수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• 사용료 납부방법 현실화 • 사용료 감면 대상의 구체적 명시로 대관업무 확립